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수 석전문위원

####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장선배 의원 등 7명

#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5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### 3. 제안이유

-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% 이상을 재 적립 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.
-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이자의 20%이상 기금 재 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,
  - "해촉"을 "위촉해제"로 수정(**안 제5조**)
  - "기타"를 "그 밖의"로 수정(안 제5, 8조)
- 다. 같은 의미가 반복된 조항 수정(안 제10조)
- 라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규정(**안 제11조**)

#### 5. 검토의견

사료됨.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,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%이상을 재 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며,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.
-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별도 계정에 의해 재해구호사업, 노인 복지 지원사업, 장애인복지 지원사업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 원사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,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 을 제외하고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.
- 이자 재 적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첫째, 기금의 설치·운용이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른 단체위임 사무로 법리적인 문제가 없으며, 둘째, 도민의 기금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,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이자수익금 감소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
-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는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것으로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년 이내로 정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된 바타당하다고 사료됨.